

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5. 2. 17.
북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. 2. 3. 마포구청장
나. 회부일자 : 2025. 2. 4.
다. 상정일자 : 제27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25.02.17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: 어르신동행과장

가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,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을 위한 마포복지재단의 행정재산 무상사용에 대하여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무상사용 필요성

- 망원동 반찬공장을 통한 거점형 이동급식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, 효도밥상 수요도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

- 기존 반찬공장만으로는 증가하는 급식수요 충족에 한계(공간협소로 설비 확충 어려움)가 있음에, 반찬공장 추가 조성 및 운영이 필요함

※ 2곳의 반찬공장에 기반한 ‘마포형 이동급식 시스템’ 완성 도모

- 보다 적극적인 효도밥상 사업의 확대 추진 및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, 마포복지재단의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을 위한 행정재산 무상사용 필요

2) 무상사용 시설현황

시설명	소재지	무상사용 면적
상수동복합청사	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397 지하1층	381.44 m^2
상수빗물펌프장	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282 2층	205.964 m^2

※ 기존 94.57 m^2 → 246.19 m^2 로 증축 후 전체 면적 사용

3) 사용기관 : 마포복지재단(마포구 출연기관, 비영리 재단법인, 공익법인)

4) 사용용도 : 효도밥상 반찬공장 및 반찬공장 사무실 등

시설명	조성시설	사용용도(시설현황)
상수동복합청사 (상수동 397)	효도밥상 반찬공장	식자재창고, 전처리실, 조리실, 포장실, 세척실
상수빗물펌프장 (상수동 282)	효도밥상 반찬공장 사무실 등	사무실, 회의실, 물품창고 등

5) 사용기간 : 2025. 3. 1. ~ 2030. 2. 28.(5년)

6) 사 용 료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‘면제’

7) 참고사항

- 관련규정
 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

【 2025년 효도밥상 확대계획 】

- 사업대상: 75세 이상 어르신 중 급식이 필요한 어르신
- 이용인원: 기존 2,000명 -> 4,000명으로 확대
 - 2024년 급식기관 지속운영: 2,000명(현장급식 400명, 이동급식 1,600명(망원동 반찬공장))
 - 2025년 반기별 이용자 확대: 2,000명(상반기 1,000명, 하반기 1,000명(서강동 반찬공장))
- 사업주체: 마포구, 마포복지재단(효도밥상 사업 및 반찬공장 운영 등)
- 주요내용
 - 75세이상 어르신에게 (소득수준에 상관없이) 양질의 무료중식 제공(연중)
 - 일상까지 케어하는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: 안부확인 및 건강·법률·세무상담
 - 반찬공장을 통한 거점형 이동급식으로 효도밥상 확대(급식기관 및 이용자 추가)
- 운영형태(반찬공장)
 - 운영방법: (반찬공장) 국·반찬 조리/배송 -> (이동급식기관) 급식 배식(밥은 현장취사)
 - 운영인력 : 8~9명(영양사 1명, 조리사 및 조리보조원 5명, 운전원 2명 등)

3. 검토보고 (장홍용 전문위원)

-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동의안으로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을 위한 시설을 무상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며,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고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

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주요내용으로는 망원동 반찬공장을 통한 거점형 이동급식 및 호도밥상 수요 증가 및 이용인원을 2025년 4,000명으로 확대하는 계획에 따라 반찬공장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무상사용 시설은 상수동 복합청사(舊 어르신돌봄 통합센터)를 조리실 등 반찬공장으로, 상수빗물펌프장 2층을 사무실 등으로 사용 예정이며, 사용기간은 2025. 3. 1부터 2030. 2. 28까지 5년이고 소요예산은 1,128백만원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1,048백만원과 구비 예산편성액 80백만원임.

- 본 동의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공유재산 무상사용도 충족하는 바, 동 사무의 무상사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 예산추계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. 관련법규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17조(사용료의 감면) ⑤ 법24조 제1항 제4호에서“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- 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8조(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)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·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2. 효도밥상 급식기관 운영현황

연번	유형	동별 효도밥상		기 관 명	정 원	현 원	비 고
총 계 (현장급식+이동급식)					1,550	1,345	
소 계 (현장급식)					419	407	
1	현 장 급 식	공덕동	1호점	아현노인복지센터	26	26	복 지 관
2			2호점	아현실버복지관	26	26	복 지 관
3		용강동	1호점	용강노인복지관	35	34	복 지 관
4			염리동	1호점	뉴 미 가	29	28
5		대흥동	1호점	우리마포복지관	36	36	복 지 관
6			서강동	1호점	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	35	35
7		아현동	1호점	해든한식뷔페	30	30	일반식당
8			서교동	1호점	풍년한식뷔페	27	27
9		합정동	1호점	청 주 식 당	25	25	일반식당
10			연남동	1호점	송가네감자탕	25	23
11		망원1동	1호점	마 포 나 루	28	26	일반식당
12			망원2동	1호점	스 트 링 큰	25	23
13		성산1동	1호점	아 빠 밥 상	35	35	일반식당
14			성산2동	1호점	이 천 억 갈 비	37	33
소 계 (이동급식)					1,131	938	
15	이 동 급 식 ※ (망원) 반찬 공장	아현동	2호점	아현실뿌리복지센터	35	35	공공시설
16			3호점	공덕실뿌리복지센터	35	29	공공시설
17		도화동	2호점	석 불 사	35	27	종교시설
18			용강동	2호점	은 강 교 회	35	29
19		대흥동	2호점	선학원만덕선원	35	19	종교시설
20			염리동	2호점	새 로 운 교 회	35	32
21		신수동	2호점	신수동주민센터	49	49	공공시설
22			서교동	2호점	서교동주민센터	35	30
23		합정동	2호점	다 운 교 회	35	37	종교시설
24			망원1동	2호점	주 님 의 교 회	35	22
25		망원2동	2호점	새 소 망 교 회	49	49	종교시설
26			3호점	쌈지경로당(망원실뿌리)	49	49	경 로 당
27		연남동	2호점	일 심 교 회	35	25	종교시설
28			성산1동	2호점	열 림 교 회	49	49
29		상암동	2호점	하 늘 빛 교 회	40	40	종교시설
30			성산2동	2호점	무리울새마을경로당	35	27
31		서강동	2호점	서강동주민센터	41	36	공공시설
32			공덕동	3호점	덕 성 경 로 당	35	23
33		도화동	3호점	영 광 교 회	35	31	종교시설
34			신수동	3호점	동 막 경 로 당	35	26
35		서강동	3호점	농 바 우 경 로 당	35	22	경 로 당
36			망원1동	3호점	오 칠 경 로 당	35	22
37		성산2동	3호점	가좌행복경로당	35	27	경 로 당
38			상암동	3호점	상암동주민센터	35	31
39		용강동	3호점	대흥동태영@경로당	35	24	경 로 당
40			대흥동	3호점	마포여성동행센터	35	31
41		신수동	4호점	익 수 경 로 당	35	25	경 로 당
42			서교동	3호점	신 촌 로 경 로 당	35	20
43		합정동	3호점	합 정 경 로 당	35	34	경 로 당
44			상암동	4호점	상암월드컵파크10단지경로당	49	38

〈2025.1월 현재〉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